

국 제 우 편 물 간 이 통 관 신 청 서

(통관 관련 문의: 00000국제우편세관 000-000-0000)

1. 통관대상 우편물

통관번호(6자리)		중 량(g)	
우편물번호		수취인 성명	
신고품명		도착일자	년 월 일

2. 아래 내용을 작성한 후 세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우편물 내용 (품명·수량 등)	※ 상세히 기재
우편물가격 및 배송료	○ 물품가격: (화폐단위:) ※ 영수증 및 인터넷 화면 캡처(전자상거래) 등 가격자료 제출시 신속한 처리 가능 ○ 물품가격에 운임(우편요금) 포함 여부(☐ 미포함, ☐ 포함) ○ 전자상거래(인터넷) 구매 물품 해당 여부 (☐ 예, ☐ 아니오)
수취 사유	☐ 개인구매 ☐ 선물 ☐ 재반입 ☐ 기타 (상세히 기재) ※ 해당사항에 체크(판매용 물품은 수입신고 대상임)
수 취 인	○ 개인통관고유부호: ○ 연락처: ※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 기재
반송 및 폐기 신청	◇ 반송 또는 폐기 신청 여부 (☐ 예, ☐ 아니오) ○ 반송(☐ 전체, ☐ 부분), 폐기(☐ 전체, ☐ 부분) ○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: ☐ 폐기 ☐ 침해부분 변경 후 반송 (사유 : 반입제한, 수취거절 등)
FTA협정관세 적용 신청	◇ FTA협정관세 적용 신청 여부 (☐ 예, ☐ 아니오) ☐ 한-EU ☐ 한-EFTA ☐ 한-미국 ☐ 한-아세안 ☐ 한-캐나다 ☐ 한-인도 ☐ 한-칠레 ☐ 한-페루 ☐ 한-터키 ☐ 한-중국 ☐ 한-영국 ☐ 기타() ※ FTA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,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구매처(국가), 가격 정보가 기재된 구매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세금 납부 방법	☐ 계좌이체 ☐ 신용카드납부 ☐ 수취시 현금납부 ※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로택스(www.cardrotax.kr) 사이트 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가능하며, 주민등록번호는 담당자에게 직접 알려주어야 합니다.
비 고 ○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,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, FTA협정관세 사후 적용 신청(예정) 물품 등은 「관세법」 제241조제1항에 따른 “수입신고”를 하여야 합니다. ○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시 수입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합니다(다만, 판매용, 상품건본 등 일반적인 상업적 성격의 물품은 수입신고 대상 임을 유의).	

「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22조제3항에 따라 간이통관을 신청합니다.

20 . . .

3. 신청인 (성명) [인 또는 서명] (수취인과의 관계) (전화번호, 휴대폰)